

“2세에 일본만행 알려 흄족”

‘징용배상’ 기각 정재원씨·신혜원 변호사

“아직 끝이 아닙니다. 피고를 반드시 가주 대법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” 일본계 기업 오노다 시멘트사를 상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됐던 정재원(81)씨와 정씨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신혜원 변호사는 “이번에 판결받은 의견서 내용을 잘 검토해 비론을 제기하는 시기와 절차 등을 논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정씨는 지난 달 30일 제2순회 기주항소법원으로부터 1999년 기주에서 제정된 ‘징용배상 특별법’(일명 해이든 법)은 위헌이며 가주지법에 이번 케이스를 기각시키라는 판결을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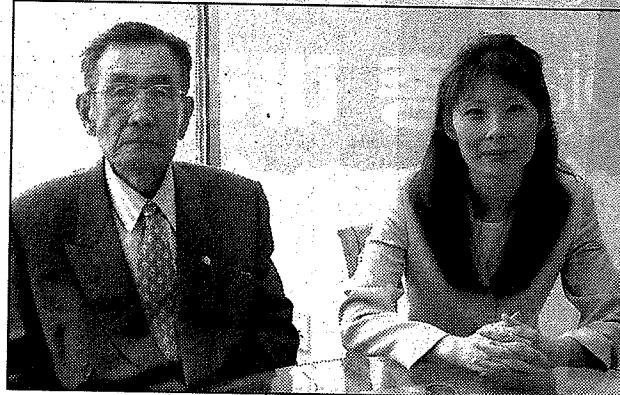
정씨는 “일본기업측이 교묘

하게 나을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”고 밝혔지만 굳은 얼굴은 실망감

아직 대법원 항소 남아
한인 커뮤니티 이슈로
계속 관심 가져주기를

을 감추지 못했다.

정씨는 “이번 소송의 목적은 일본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증명하기 위했던 것”이라며 “모국의 역사를 모르는 한인 2세들과 미 주류사회에 강제징용이라는 역사의 한 부분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다”고 덧붙였다.



징용배상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월고 정재원씨와 신혜원 변호사.

신 변호사도 “평범한 한인 이 미국 법정에서 잊혀지고 지나간 역사를 증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록을 미국 판례에 영원히 남겼다”며 “한인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번 소송에 대해 가르치고 판례를 찾아 읽어주면서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신 변호사는 “소송에서 완전히 폐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”며 “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 이슈로 생각하고 지켜 봤으면 한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장연화 기자